



즉시 배포용: 2020 년 3 월 17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JAMES 법무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주 채권 추심을 일시 중단

학자금, 의료비 및 기타 주 관련 채무가 있는 뉴욕 주민의 지불을 최소 30 일간 동결

Andrew M. Cuomo 주지사와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오늘 뉴욕주에 채무가 있고 법무장관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AG)에 회부된 의료비 및 학자금 채무 추심을 최소 30 일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즉시 발효되며,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COVID-19 전파로 인한 재정적 손해 증가에 대한 대응입니다. 수많은 뉴욕 주민이 COVID-19의 확산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수입과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무장관실은 뉴욕주에 빚져 법무장관실에 회부된 의료비 및 학자금 추심을 2020 년 3 월 16 일부터 2020 년 4 월 15 일까지 중단했습니다. 이 30 일 기간이 지나면 법무장관실은 주민들의 요구를 재평가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장관실은 뉴욕주에 빚지고 추심이 법무장관실에 회부된 기타 모든 유형의 채무 정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위기의 재정적 영향이 커짐에 따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에 빚진 채무의 추심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이 새로운 조치는 뉴욕주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장관실은 이런 위기 상황에 뉴욕 주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장관실에 회부된 주 의료비 및 학자금 채무를 최소 30 일 동안 추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뉴욕 주민들이 서로 돕고 구해야 할 때이기에 저는 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뉴욕주 및 주 기관을 대신하여 제기된 합의와 소송을 통해 뉴욕주에 빚진 특정 채무를 징수합니다. 현재 총 165,000 건 이상이 주 채무 징수 정지 기준에 부합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5 개의 주 병원과 5 개의 주 재향군인회로 인해 의료비 부채가 발생한 환자
-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캠퍼스로 인해 학자금 부채가 있는 학생
- 석유 유출 청소 및 제거 비용, 재산 피해 및 계약 위반, 기타 주 기관이 부과한 비용과 관련하여 채무가 있는 개인 채무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유주, 특정 주택 소유주

임시 정책은 또한 추심을 위해 법무장관실에 회부된 모든 미결제 주 의료비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발생과 수수료의 징수를 자동으로 일시 중단하며, 뉴욕 주민은 이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뉴욕주에 빚지고 법무장관실로 회부된 의료비 또는 학자금이 아닌 부채가 있는 뉴욕 주민들은 또한 주 채무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구제를 신청하려는 개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무장관실의 코로나바이러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지불 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온라인 양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장관실 직통전화 1-800-771-7755 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